

공정위, 제5회 국제 경쟁정책 워킹숍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정책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개도국을 대상으로 『제5회 국제 경쟁정책 워킹숍』을 2000년 11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서울 소피텔엠베서더호텔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워킹숍에는 프랑스경쟁위원회 F. Souty 상임심사관,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P. Rudnev 과장, OECD 경쟁정책위원회의 L. Goranson 수석행정관, S. Van Siden 수석행정관 등과 숙명여대 법대 원용수 교수, 공정위 정책국 허선 국장 등이 강사로 참여하였다. 특히 이번 워킹숍에는 Oleg. Kolomiichenko 러시아 경쟁당국 차관보급, Xuan Hoang Tho 베트남 상무부 국장 등 8개 APEC 국가를 비롯한 총 11개국 18명의 개도국에서 참가하였다.

이날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혁명과 세계화로 대변되는 경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새로이 발생할 수 있는 반경쟁행위에 대한 규율과 경쟁당국간 협력 및 국제경쟁규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최근 한국의 경제위기는 근본적으로 시장경제가 제대로 정착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므로 개도국의 경우 개발초기부터 경쟁법을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법 집행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다.

전자상거래와 경쟁정책, 국제경쟁규범 등 시사성 있는 이슈와 민영화 및 규제완화, 카르텔 조사 기법 및 제재 등에 관한 주제발표, 개도국 참가자들의 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된 동 워킹숍에서는 주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필수설비원리'의 도입방안, 정보확산에 따른 사업자간 담합 가능성 및 가격차별의 경쟁저해성 등과 전기·가스·통신·철도 등 기간산업의 구조조정, 규제개혁 및 경쟁촉진과 민영화의 성공적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5차 국제 경쟁정책 워킹숍에서 논의된 각 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ECD/CLP의 Sally Van Siden은 민영화 및 규제산업의 탈규제화와 경쟁정책에서 전기, 가스, 통신과 철도와 같은 주요 기반경제산업들에 대한 규제개혁이 몇몇 OECD회원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반경제산업에서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3가지의 본질적인 요소로 첫째, 구조조정(Restructuring), 둘째, 규제개혁(Reforming regulation), 셋째, 규제담당기관의 개혁(Reforming institutions)을 언급하였다. 구조조정(Restructuring)은 기업의 틀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기업을 몇 개의 새로운 회사로 분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규제개혁은 회사에게 적용되는 경제규제의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자유스러운 시장진입과 회사들에게 그들이 가격이나 투자를 하는데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해주는 탈규제를 의미하며 규제담당기관의 개혁은 독립적인 규제담당

기관을 설립하고 경쟁법 집행에 대한 적절한 권한을 가지는 경쟁당국의 보장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Sally Van Siclen은 기반경제산업의 특성으로 전기 등이 그 국가의 기반경제의 규모를 측정하는 두가지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이며 많은 국가들이 이들 산업을 직접 소유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이런 분야에 대한 개혁의 결과는 종종 고도의 정치성을 띤다고 말했다. 둘째로 규제와 경쟁에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들 산업은 일단 한번 투자를 하면 회복할 수 없는 많은 비용이 매물되며 특히 이 분야에서는 선투자가 이루어지고 나서 몇 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첫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개인투자를 유치하기를 원한다면 규제기관은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가져야 하며 이 신뢰성과 예견가능성의 창출이 규제자들의 기본적인 업무의 하나라고 말하였다. 셋째, 이들 산업은 다른 일부분이 경쟁적으로 변하는 반면 다른 부분은 독점화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네번째 특성은 빠른 기술적인 변화라고 언급하였다. 이것은 관련시장에 있어서의 수요수준의 변화와 기술의 변화는 이들 산업의 구조에 대해 오랫동안 가져온 믿음과 규제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뒤집을 수 있으며 기술의 변화는 전기생산을 가능한 경쟁적으로 만들고 정보기술은 전기시스템이 새로운 방법과 협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정보통신에 있어서 기술변화는 경쟁에 대한 중요성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말하였다. Sally Van Siclen은 구조조정과 규제개혁 그리고 규제담당기관의 개혁이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며 민영화는 구조조정과 규제개혁 그리고 규제담당기관 개혁 수단의 효율성을 지원하며 경쟁이 규제를 대체할 수 있도록 경쟁법 집행을 성숙시켜야 하며 경쟁당국과 규제당국의 명확한 책임소재는 효율적인 경쟁법 집행과 규제간의 협조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OECD/CLP의 Lennart Goranson은 전자상거래와 경쟁정책에서 OECD는 전자상거래를 경제성장과 고용, 세계무역의 확대, 그리고 사회여건 개선을 위한 중심적인 요소로 보고 OECD의 활동은 전자상거래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정보기반을 향상시키며, 디지털 시장을 위한 준거법, 사용자와 소비자 신뢰 등 전자상거래의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자상거래는 많은 전통적 시장의 확대를 가져오며 더 낮은 비용의 새로운 유통방법을 제공하며 소비자들과 전문가들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며 전통적인 시장에서는 획득할 수 없는 새로운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의 Paul Rudney는 카르텔에 대한 연구에서 호주에서는 미국과 캐나다와 같은 공식적인 Leniency/Amnesty 프로그램(카르텔 신고자에 대한 감면조치제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개별적인 사례별로 Leniency/Amnesty을 제공함으로써 카르텔 참가자들로 하여금 조사협조를 조장하고 있는데, 이는 카르텔 협정에 대한 상세한 증거를 포함한 완전한 협조를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국제적인 카르텔 조사를 위해 미국과 뉴질랜드 대만 등과 경쟁법 집행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